

허가수수료의 기준(제41조제1항 관련)

사 항 별	수 수 료 액
1.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하천공사 또는 하천의 유지·보수에 관한 허가	허가 시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)의 1/1,000
2.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가. 공작물의 신축·개축·변경	허가 시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)의 1/1,000
나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	허가 시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하천시설의 점용 및 토석·모래·자갈의 채취, 그 밖에 하천산출물의 채취	점용료의 1/1,000
라. 토지의 점용, 스케이트장·유선장·도선장의 설치, 식물의 식재,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또는 선박의 운항	없 음
3.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의 신규 또는 변경	하천수 사용료의 1/1,000
4.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천예정지 안에서의 행위허가 가.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	허가 시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)의 1/1,000
나. 토지의 굴착·성토·절토,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	허가 시 공사비(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)의 1/1,000
다. 죽목(竹木)의 식재	없 음
5. 국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또는 농지개량조합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를 받는 경우	없 음